

## 시행세칙 전문

### **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강사 임용 시행세칙**

2019.06.12. 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「서울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」 제27조에 따라 농업생명과학대학 소속 강사의 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**제1장 신규채용**

**제2조(채용공고)** 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학부(과)장은 매학기 학장이 지정한 기일까지 채용분야, 채용인원, 담당 교과목 및 지원자격, 면접심사 시행 여부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, 학장은 농업생명과학대학 인사위원회(이하 “인사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 후 공고 한다.

**제3조(신규채용후보자 심사)** 신규채용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학부(과)에서 실시하되, 학부(과)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하거나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,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강사 임용 심사업무 처리지침(이하 “강사임용지침”이라 한다)에 따른다.

##### 1. 서류심사

- 가. 모집대상 전공(교과)분야와의 적합성
- 나. 교육경력 및 교육(강의)계획서
- 다. 총괄연구업적
- 라. 자기소개서

## 2. 면접심사

- 가. 공개 발표 및 교육 계획
- 나. 임용적합성

**제4조(심사위원)** 학장은 해당 전공(교과)분야와 관련이 있는 전임교원 또는 관련 전문가 중 3명을 학부(과)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,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부(과)장이 된다. 각 단계별 심사위원은 동일하게 구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부(과)에서 학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.

**제5조(심사방법)** 신규채용후보자의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강사임용지침에 따른다.

**제6조(특별채용)** 학부(과)장은 「서울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」 제9조에 따라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 공고 및 접수, 면접 심사 단계를 생략하고 강사임용지침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며, 제7조에 따라 채용후보자를 학장에게 추천한다.

**제7조(채용후보자의 추천)** ① 학부(과)장은 면접심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서류심사 점수 35점 이상 또는 서류 및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한 “종합평가점수” 70점 이상을 획득한 채용후보자를 학장에게 추천한다.  
② 인사위원회는 학부(과)장이 제출한 심사 결과의 타당성을 심의한다.  
③ 학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·의결이 된 채용후보자를 총장에게 추천한다.  
④ 채용후보자가 임용예정일 이전에 임용을 포기할 경우 「서울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」 제14조 제3항에 따른다.

## 제2장 재임용

**제8조(재임용 기회제공 및 절차)** 강사에 대한 재임용 기회제공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」 제18조에 따른다.

**제9조(재임용 심사)** ① 강사의 재임용 심사는 해당 강사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「서울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」 제19조에 따라 관련 학부(과)에서 실시한다.  
② 동조 제1항 각 호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 절차 및 구체적인 평가의 항목·비중·방법 등은 강사임용지침에 따른다.  
③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 및 제5조를 따른다.

**제10조(재임용예정자 결정 등)** ① 학부(과)장은 강사의 임용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재임용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 
② 학부(과)장은 해당 강사가 「서울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」 등에서 정한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학장에게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 
③ 인사위원회는 학부(과)장이 제출한 심사 결과의 타당성을 심의한다.  
④ 학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·의결이 된 재임용예정자를 총장에게 추천한다.

**제11조(그 밖의 사항)**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」에 따른다.

**부칙<제138호, 2019.6.12.>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적용례)**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채용 되는 강사(해당 강사를 신규 채용하기 위한 절차 포함)부터 적용한다.